

12 NYCRR 312.5 조정 결정

(a) 변호사나 면허를 보유한 대리인이 청구인을 대리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제안 조정 결정을 모든 당사자에게 우송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만남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에 이의가 접수되지 않으면, 또는 조정자가 있는 자리에서 서명한 경우, 제안된 조정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이 섹션의 하위 항목 (g), (i) 및 (j)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모든 목적에 따른 위원회의 지급을 성립시킵니다.

(B) 변호사나 면허를 보유한 대리인이 청구인을 대리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에서 제안된 조정 결정을 모든 당사자에게 우송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만남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에 이의가 접수되면, 제안된 조정 결정은 최종 확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결정은 의장이 지정한 노동자 보상법 판사가 검토 및 승인하기 전까지 최종 확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 보상법 판사는 조정국의 제안 조정 결정을 접수한 날짜로부터 15일 이내에 검토하고 승인 또는 비승인을 확정해야 합니다.

승인 또는 비승인 통지서는 이 섹션의 하위 항목 (b)에 자세히 명시된 노동자 보상법 판사의 검토 후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d) 노동자 보상법 판사가 제안된 조정 결정을 승인하면 만남에 출석하지 않은 청구인은 이 섹션의 하위 항목 (c)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안 조정 결정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 고용주 또는 보험회사도 제안된 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의 제기는 이 섹션의 하위 항목 (b)에 따라 제안 결정이 우송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f)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또는 청구자가 만남에 나타나지 않고 노동자 보상법 판사가 제안된 조정 결정을 승인하지 않거나 청구자가 제안된 조정 결정을 철회하는 경우, 케이스에 대한 공청회 일정을 정하게 되며 공청회 전에 회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g) 노동자 보상법의 섹션 22 및 23에 따라 최종 조정 결정은 검토되지 않습니다. 조정 케이스에는 노동자 보상법의 섹션 123에 따른 위원회의 지속적인 관할권이 적용됩니다.

(h) 보험회사는 지급 내역을 보여주는 양식 C-8/8.6을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 케이스의 경우 노동자 보상법 섹션 25에 기재되어 있는 기간 내에 양식 C-8/8.6을 제출해야 합니다.

(i) 노동자 보상법 섹션 25의 하위 항목 2-b의 문단 (h)에 따라 보험회사가 적시(10일 이내)에 조정 결정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의장 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회 직원에 의해 \$5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당 벌금은 노동자 보상법 섹션 22 및 23에 따라 검토되지 않지만, 의장이 지정한 위원회 직원이 검토할 수 있으며 의장이 설립한 절차에 따라 해당 벌금을 검토합니다. 출석하지 않은 청구인에 대한 지급 시기는 청구인이 이 섹션의 하위 항목 (d)에 따라 제안 조정 결정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계산합니다.

(j) 지급 지연에 대한 노동자 보상법 섹션 25의 하위 항목 3의 문단 (f)에 포함되어 있는 불이익과 평가는 조정 케이스에 적용되지 않습니다.